

의안 번호	제3606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4월 04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4월 1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에 관한 공고 방법을 정비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의견 청취 관련 근거 조항 정비(안 제7조)
- 나. 주민의견 청취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안 공고 매체 및 방법(안 제7조 및 제8조)
 - 개정 : 시보, 시홈페이지, 국토이용정보체계
- 다. 인구규모(50만)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조문정비(안 제65조, 제69조, 제74조, 제75조, 제76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[원안가결](#)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